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서비스 사이버보안 분야

선도사업자 선정 관련 간담회

2024.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차

01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개**

02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03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04 **Q&A**

참고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개

코로나 등으로 인해
중국의 석탄수급 한계로
원료품목(요소수 등)수출통제('21.11)



정부 '탄소중립 드라이브' 앞에 나타난 요소수 대란... 친환경 정책 역주행하나
저감장치 장착 의무 한시 해제 방안 추진,
요소수 해결하려다 오염물질 배출 불가피

(한겨레신문, '21.11.11)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23.12)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주요내용

- ✓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제협력, 수입처 다변화 지원 등
- ✓ 공급망 현황조사 및 경제안보품목등(품목/서비스) 지정, 비축·관리, 선도사업자 선정·지원
- ✓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공급망 위기대응 메뉴얼 작성·운영 위기품목 지정·관리
-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운영 등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개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경제안보품목

해외 특정국가 또는 특정 지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등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

차량용 요소, 수처리용 활성탄, 염화칼슘, 이차전지의 원료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 300여개 지정(1년 주기 갱신)

품목
질소인산칼륨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 원료
통신 및 센싱용 발광소자
PH중화제, 세정제 관련 물질
양식용 사료의 주된 원료
도로제습제·제빙제·건강보조식품 원료
전차·자주포·회전익기 동력계통 부품
항공기 착륙계통 합금소재 및 탄소소재

경제안보서비스

법 제4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

해운, 항공을 포함한 물류서비스와 사이버보안이 경제안보서비스 신규지정

서비스	
사이버보안	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물류	항공운송서비스
	해양운송서비스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 선도사업자 개념

경제안보 상 **긴요한 핵심산업의 국가 공급망을 강화하고 선제적 위기대응역량을 확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등의 선도사업자를 선정·지원하여 공급망 리스크 사전 대비 및 체계적 관리하고자 함

선도사업자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선도사업자 지정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근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 선도사업자 지원사항

지원사항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대출 이율 우대), 기타 정책 지원(예산확보,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기금지원)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기금 지원

대출

5개 필요 자금별 대출 지원

시설자금

기술자금

투자자금

구매자금

운영자금

(대출금액) 필요 자금별 실소요금액의 80~90% 이내(신용등급을 고려한 기업별 대출 한도 범위 내)
(대출기간) 최초 대출 취급일로 부터 10년 이내

채무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선도사업자가 채무불이행 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채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반거래 관련 발생 채무
수혜자	기업 대출을 취급, 기업발행 채권 인수 금융기관
금액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투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선도사업자 또는 경제안보물품 등에 투자를 추진(주체 : 수출입은행)

지분증권	국내외 법인 주식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취득
수익증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펀드에 공동투자
채무증권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기업어음등에 투자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 선도사업자 의무사항

선도사업자 의무

-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이행**
-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 이행** 및 소관부처 **공급망 현황조사 협조**

의무사항 관련 법령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제2항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공급망 관련 동향 등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제4항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관련 구입량,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관련 자료 제출등의 요구)

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구입량,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세부기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기본법 제19조제5항,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계획의 적정성, 재무건전성과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성 으로 구성

- 각 항목별 미달이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각 항목은 정성평가로 이뤄짐

관련성

① 사이버보안 산업에서 해당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 해당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등

② 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사이버보안 서비스 매출의 비중

- 사업자가 영위하는 총 사업 중 사이버보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수급현황] 內 작성된 내용
 으로 평가
 ※ 증빙자료 별도 제출 必

적정성

① 해당 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 해당 서비스의 목표 및 추진 계획 등

②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또는 실적, 이행 계획의 적합성 등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사업종류], [사업계획/실적]
 內 작성된 내용으로 평가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세부기준

재무건전성

①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현금 흐름 창출 능력 등

② 재무 건전성 제해요인 해당 여부(아래 해당 시 재무여건 불충족)

- 1)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 2)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3)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 4)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사업계획/실적], [재무정보]
내 작성된 내용으로 평가
※ 증빙자료 별도 제출 必

전문성

①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 및 연구개발의 역량

- 연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국내 외 인증 및 특허 현황 등

<예시>

해당 사업자의 침해사고 예방·대응 연구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해당 사업자의 침해사고 예방·대응 기술 보유 현황 및 우수성(인증 및 특허 등)
해당 사업자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우수사례 등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기술/연구개발 역량]
내 작성된 내용으로 평가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 개요 및 절차

선도사업자 선정개요

- (대상)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사업자단체
- (지정방법)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제출서식)를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정규모) **1회 5개사** (대기업 최대 3개), 연 10개사 (대기업 최대 5개사)
- (지정주기) **24년은 하반기 1회**, 25년부터 연 2회 (상/하반기)
- (지정기간) **3년** (사업일정 등 고려하여 최초 5년까지 연장 가능)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 결격 및 지정취소 사유

선도사업자 결격사유

- 안정화 계획/신청 서류가 허위, 거짓인 경우
- 계획서 하자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최근 회계연도 결산 기준 감사의견 “한정”인 경우
- 기술 내용, 제품 품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선도사업자 지정 취소

- 법 제20조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②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 ③ 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④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 지속 불가 시

선도사업자 지정 시

- 지정 취소 시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지정 제한
- 선정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지원액 일부/전부 회수 가능
(법 제20조제3항)

Q&A

공급망안정화기금

기금운영체계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공급망안정화정책의 총괄 및 조정역할
기획재정부	범정부 정책총괄, 기금관리감독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 자금지원 등 심의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

경제안보품목

대외의존도가 높으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 및 원재료(소관 중앙 정부부처 선정 예정, 아래는 예시)

핵심 광물	산업소재 및 부품	주요 식량
-------	-----------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화 계획을 소관 중앙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자(소관 중앙 정부부처 선정 예정, 아래는 예시)

반도체	이차전지	해운 물류
산업소재	농산물	

경제안보서비스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이 어려운 경우, 경제안보 품목의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서비스 및 기반시설 (소관 중앙 정부부처 선정 예정, 아래는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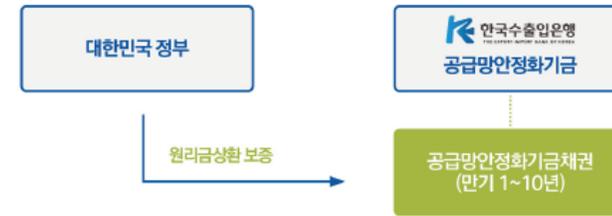
핵심물류 인프라	글로벌 항공·해상운송
----------	-------------

기본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사전대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재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



지원개요

- 지원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 지원방식: 대출, 보증, 투자 등
- 지원통화: 원화 또는 미달러화(미달러화 외 외화 지원은 사전협의 필요)
- 대출기간: 최대 10년 이내
- 대출상품: 시설자금, 기술자금, 투자자금, 구매자금, 운영자금

지원 절차 및 조건

기금지원 절차

공급망 관련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사업공고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수출입은행은 기금 지원을 심사하며, 최종 지원 결정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및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금지원 조건(기금용도의 제한)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 포함), 자기 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 포함)의 인상 등 자금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